

증평균 군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

2010. 12. 31
[전부개정
규칙 제176호]

일부개정 2015. 5. 8 규칙 제267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7. 6. 30 규칙 제320호
(증평균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균 규제개선 및 용여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4. 12. 27 규칙 제45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균 군세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8, 2024. 12. 27>

제2장 담배소비세

제2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② 부과부서장은 「증평균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한 담배소비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2019. 12. 26>

제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제3장 주민세

제1절 개인분 <개정 2024. 12. 27>

제4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장은 매년 균등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를 과세하기 전에 주민등록표 및 법인등기부 등 관계 공부를 확인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7의2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5. 5. 8, 2024. 12. 27>

제5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부과부서장은 매년 1월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확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조사·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2019. 12. 26, 2024. 12. 27>

제6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4. 12. 27>

제7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사업소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② 부과부서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2019. 12. 26>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제9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2019. 12. 26, 2024. 12. 27>

1. 사업소를 새로 신설 또는 이전하였을 때
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되었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되었을 때
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되었을 때

② 부과부서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2024. 12. 27>

제3절 종업원분 <신설 2015. 5. 8>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② 부과부서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2019. 12. 26>

[제목개정 2015. 5. 8]

제11조(특별징수) 부과부서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전문개정 2015. 5. 8]

제12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9의3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2024. 12. 27>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② 부과부서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제1항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8>

[제목개정 2015. 5. 8]

제4장 지방소득세 <신설 2015. 5. 8>

제13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장은 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장은 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③ 부과부서장은 법 제103조의23 및 제103조의24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④ 부과부서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전문개정 2015. 5. 8]

제14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 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5. 8]

제15조(보통징수) 부과부서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와 같은 법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전문개정 2015. 5. 8]

제5장 재산세

제16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5. 5. 8>

② 부과부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신고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변동이 있을 때와 신고된 과세대상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수시로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제17조(비과세 관리) ① 부과부서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② 삭제 〈2019. 12. 26〉

제18조(물납 및 분납) ① 부과부서장은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② 부과부서장은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제19조(납세관리인) 부과부서장은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접수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제6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0조(분할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2019. 12. 26〉

② 부과부서장은 제1항의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③ 부과부서장은 「증평균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2019. 12. 26〉

제21조(연세액 일시납부)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② 부과부서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③ 부과부서장은 「증평균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2024. 12. 27>

④ 제1항의 경우 연세액 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는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5. 5. 8, 2024. 12. 27>

1. 삭제 <2024. 12. 27>

2. 삭제 <2024. 12. 27>

3. 삭제 <2024. 12. 27>

4. 삭제 <2024. 12. 27>

5. 삭제 <2024. 12. 27>

제2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 또는 제21조에 따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분 부과 시 해당 분기 세액의 총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3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장은 매년 자동차세를 과세하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 공부를 확인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② 부과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2019. 12. 26>

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3. 자동차의 용도변경 및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최대적재량 등이 변경된 경우
4. 자동차의 사용폐지가 된 경우
5. 비과세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 자동차로 된 경우
6.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대상 자동차로 된 경우

제2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체납처분) 법 제133조에 따라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 없이 즉시 압류하는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압류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2017. 6. 30>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26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② 부과부서장은 법 제137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신고 또는 납부를 받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 자료를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와 대조하여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제2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2019. 12. 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5. 8 규칙 제2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 30 규칙 제320호, 증평균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증평균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증평균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45호서식”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균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2. 27 규칙 제4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2. 27>

(증평균)

[illegible]

– 1042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2. 27>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증평군)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적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팀장	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증평균)

[illegible]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미색모조 80g/m²)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12. 27>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처리부														
○○연도 ○○월분												(증평군)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 적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팀장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 5. 8>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증평균)	
납세번호	납부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성명	전 화 번 호	총 과세표준	안분율	지방소득세	합계세액	수납금액
주 소			부과일자	사 업 기 간		총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가산세	납기일자	수 납 일
법인등록번호	현 소 재 지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12. 26>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증평군)	
일련번호	납세번호	납부구분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귀속연도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합계	수납금액	수납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고지 주소			고지 주소지					
	양 도 물 건					부과일	납기일	자료구분	비 고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 5. 8>

일련번호	
------	--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특별징수의무자 주소															기관명(사업장명)														
월별	납부 일자	근로소득				이자소득				기타(배당)소득				보통징수분						결 재									
		인원	과세 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 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 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조사 월일	과세 표준	지 방 소득세	가산세	합계	결정 일자	납부 일자	담당자	팀장	과장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정 상여																													
기타																													
계																													

297mm×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 5. 8>

(증평군)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과세 번호	접수 일자	법인명	주 소		법인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법 인 등록번호							담당자	팀장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12. 26>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증평균)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생년월일							담당자	팀장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12. 26>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증평군)

과세 번호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전화번호	생년월일								담당자	팀장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12. 26>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증평군)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팀장	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12. 26>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증평군)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팀장	과장

297mm×210mm(일반용지 80g/m²)

건 축 물 조 사 표								
소유자	전 소 유 자			현 소 유 자			이전일자	이전사유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구 분	소 재 지		구 조	용 도	신축년도	건축물 연면적	비 고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구 축 물		부 대 설 비		조사년월일 . . .			
공 부					조사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현 황					조사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비 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 면)

건 축 물 조 사 표		
건 축 물 실 측 도	면적산출	참고사항
2mm 그래프용지 사용		

주 택 조 사 표								
소유자	전 소 유 자			현 소 유 자			이전 일자	이전 사유
	성 명 (법 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성 명 (법 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구 분	소 재 지		구 조	용 도	신축연도	주 택 연면적	비 고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구 축 물		부 대 설 비		조사년월일 . . .			
공 부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현 황					조사자 직 성명 (인) 조사자 직 성명 (인)			
비 고								

※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 면)

주 택 조 사 표		
주 택 실 측 도	면적산출	참고사항
2mm 그래프용지 사용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증평군 군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12. 26>

선 박 조 사 표						
전 소유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현 소유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 화	주 소	
선박 현황	소 재 지	종 류	용 도	건조 년도	선박 번호	총톤수
이전일자						
이전사유						
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12. 26>

항 공 기 조 사 표							
전소유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현소유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항공기 현황	소 재 지	종 류	용 도		제작 년도	등록 번호	등록일자
	내용연수	제작회사			기 종		최대이륙중량
이전일자							
이전사유							
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12. 26>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																		
년도 월분														(증평균)				
접수 번호	토지 면적	성명 (법인명)	상 호	납세자 주 소	과 세 표 준	비과세		사 후 관 리 내 용								결재		
	건물 면적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 번호					1차	확인내용	4차	확인내용	7차	확인내용	10 차	확인내용			
						재산세	지역자원 시 설 세 (특정부동산)	2차	확인내용	5차	확인내용	8차	확인내용	11 차	확인내용	담당자	팀장	과장
						합 계		3차	확인내용	6차	확인내용	9차	확인내용	12 차	확인내용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12. 26>

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 신고서								
신고인 (납세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 번호			
	주소(소재지)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전 자 우 편 주 소			
신 고 내 용								
재산의 종류	재산의 소재지	지적,면적, 톤수 등록번호	공시 지가	공용,공익 사업의 폐지일자	폐지 사유	지목 구조	사용자	
							주 소	기관명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재산세 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 임 받는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자와의 관계			
					전 화 번 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9. 12. 26>

담당자	팀장	과장

납세관리인 관리대장

(증평균)

연번	물건소재지	납세의무자			납세관리인			신고사항		직권지정 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고일	신고사유	통지일	처리자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9. 12. 26>

(앞 면)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 (납세자)	① 성명(대표자)			②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소재지)			
	⑥ 전화번호(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		
신 고 내 용				
☐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⑧ 자동차번호	⑨ 차량제원 - 승용차(배기량) - 승합차(정원) - 화물차(적재정량)	⑩ 연세액	⑪ 제 1 기분 분할납부세액	⑫ 제 2 기분 분할납부세액
「지방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증평균수 귀하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 임 받는 자	성 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 화 번 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접수연월일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신고인(납세자)란

- ① 성명(대표자) : 개인은 성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성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 ②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개인(내국인)은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③ 상호(법인명) :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사업자는 해당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 ④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⑤ 주소(소재지) :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⑥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⑦ 전자우편주소 :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기재합니다.

☐ 신고내용

- ⑧ 자동차번호 :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번호를 기재합니다.
- ⑨ 차량제원 :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제원(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정원, 화물차는 적재적량)을 기재합니다.
- ⑩ ~ ⑫ : 과세관청에서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위임장 :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를 신고인을 대리하여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은 납세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 기타

-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시군구 ○○과(전화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9. 12. 26>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년도 ○○월분

(증평균)

접수 번호	납 세 의 무 자					과 세 표 준			수 입 신 고 수리일	주행세 신 고 납부일	주행세 신고일	주행세 납부일	송금일	결 재		
	주소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계	회발유	경유						담당자	팀 장	과 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9. 12. 26>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												
○○년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증평균)	
과세 번호	성 명	주 소		교통·에너지· 환경세액	관 할 세무서	세 율	본 세	가 산 세	계	결 채		
		전화번호	생년월일							담당자	팀장	과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210mm(일반용지 80g/m²)